



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

채원영 연구원

- 금융위원회는 2012년 5월과 6월에 발표된 「보험 판매방송 개선방안」과 「변액보험 제도개선」의 이행을 위해 「보험업감독규정」을 개정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음.
 - 또한,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(RBC)와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산출체계 등을 개선함.
- 개정안은 변액보험 제도개선, 보험판매방송 개선,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, 위험기준 자기자본(RBC) 제도 개선, 경영실태 평가지표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.
 - 변액보험 판매 전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비교공시를 강화하고,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함.
 - 변액보험 판매 전후 상품별 사업비 수준,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, 납입한 보험료의 사용내역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공시하고 총사업비 수준 등 중요사항을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.
 - 보험협회가 보험회사 등의 광고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제정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가의 경품제공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방지함.
 - 공시이율¹⁾ 산출체계를 개선하여 보험사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결정을 제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.
 - RBC제도에 자본계층화를 도입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, 지급여력금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.
 -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평가지표를 과거 실적위주에서 리스크 중심으로 보완·개편하여 잠재 리스크에 대한 사전감독을 강화함.
- 금융위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을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,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및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 등은 보험사가 제도 시행 준비를 마치는 2012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임.

(보험업감독규정 개정, 금융위원회, 9/19)

1)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부리되는 이율로서 보험사가 매달 시장금리 등을 반영하여 책정·공시 → 공시이율 산출에 자의성이 클 경우, 특정시기에만 공시이율을 높게 책정하여 계약자를 유인 가능함.